

# 공관운영세칙

[시행 2015.10.21.] [세칙 제68호, 2015.10.21.,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자산관리규정」에 따른 공관의 취득, 사용,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관”이란 임원이 사용하는 주택(아파트 등)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공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근무 지역”이란 임원이 실제 근무하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으로 통근이 가능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한 거리 범위 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용기간)** 공관의 사용기간은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치 등)** ① 공관은 해당 임원의 근무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 지역 내에 공관을 사용하는 임원 및 임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③ 근무 지역 내에 임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이미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택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용책임)** 공관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책임을 진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및 공과금의 성실 납부
4.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
5. 공관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차 관련 권리 이전 불가

**제6조(사용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관 사용을 종료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3.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관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였을 때

4. 기타 공관의 운영 및 관리상 사용 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공관운영경비의 구분 및 부담)** ① 공관운영경비의 구분과 부담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 별표 1의 일상경상비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경비로 부담한다.

**제8조(비품의 관리)** 관리책임자는 공관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재단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등)** ① 제6조에 따라 공관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 사용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공관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관을 인도하는 자는 퇴실일 현재까지 발생한 각종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대장에 등록된 비품을 다음 사용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공관의 변경)** 공관의 변경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한하며, 공관 사용자의 요청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공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공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공관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책임자는 공관 관리를 위하여 별지서식 1 “공관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공관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공관의 손실 또는 효용을 잃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책임지고 변상책임을 진다.

**제13조(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관리사항은 관리책임자의 재량으로 실행할 수 있다.

부칙 <세칙 제68호, 2015.10.2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관운영경비 부담 구분표(제7조 관련)

경비구분	시설구분	예시	부담주체
1. 재산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가. 기본시설비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2)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 (3)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보일러, 에어컨 등) (4) 통신가설, 수도, 조경시설	재단부담
	나. 유지관리비	(1) 건물 유지 및 수선 (2) 화재보험료	
2. 기본 장식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가. 비품 구입 및 장식비	(1) 응접세트 (2) 카텐, 카페트 (3) 서장, 식장	재단부담
	나. 유지관리비	(1) 비품수선 (2) 세탁비	
3. 일상경상비	가. 공공요금등	(1)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오물수거료, 아파트의 공동 관리비	사용자 부담
	나. 난방용경비	(1) 보일러 및 난방경비	
	다. 취사용경비	(1) 유류, 가스	
	라. 기타 경비	(1) 각종 집기, 청소 및 위생용품 다과류 등	

